

주간 규제 정보

Vol. 335

2021. 02. 22 ~ 2021. 02. 28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국표원,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착수 3
2. 신학기용품, 유·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4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3. 식약처,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5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4. 인도, 신규 화장품 관리규정 시행 8
5.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9
6.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1
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11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 모잠비크 자동차 부품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12
9. 멕시코 화장품 수출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17
10. 독일 마스크 공급 및 수입 현황 분석 20
11. 일본 제균 물티슈 시장 동향 2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국표원,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착수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05

- 국표원,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착수 -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킷오프 회의 개최 -

탄소중립 표준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월 22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킷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과 이상훈 국표원 원장,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포스코, 현대오일뱅크, (주)삼표, 서광공업(주)), 대학(고려대, 우석대), 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협단체(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등 14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표준화 전략 협의회는 총괄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①에너지전환, ②신유망저탄소산업, ③저탄소전환핵심산업, ④표준화기반강화)로 구성되며, 금년말까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산업별 저탄소 기술의 구현방법,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에너지 전환 표준화 분야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DC(직류) 배전을 포함한 분산형 전력망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저장·전송 기술을 포함하고, ②신유망 저탄소산업 표준화 분야는 바이오연료, 그린수소(연료전지), CCUS(탄소포집·저장·전환), 고성능 이차전지, 저전력 반도체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 주체별 ③저탄소 전환 핵심산업 표준화 분야는 수송(수소·전기차, 친환경 선박), 건물(BEMS, 단열재), 제조(FEMS, 스마트제조, 신소재), 기기(생활가전, 스마트미터), 재제조 등을 다룬다. 아울러, ④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협력, 실증·인증체계구축, 중소기업과 표준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육성, 녹색금융 등 활동도 포함된다.

이번 킷오프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표준화동향과 필요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인 포스코(철강),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 (주)삼표(시멘트), 서광공업(주)(기계·밸브)은 그린수소 등 대체연료 사용, 소재 재활용, 생산구조 전환, 공정효율 향상 관련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과 함께, 가정용전기기의 효율향상 및 스마트미터를 통한 에너지 빅데이터 표준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회원사 뿐만 아니라 고려대 등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에 따른 분산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이차전지),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외 탄소국경조치 및 녹색금융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발자국(제품별 탄소배출량)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재제조 및 소재 재사용 표준화 과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표준협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돕는 표준화지원 매치업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탄소중립 표준화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은 그간 기업이 추구해온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과는 또 다른 도전으로 기술 개발에 앞서 가이드로써의 표준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금번 협의회 활동으로 수립될 표준화전략이 실제 표준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산업부는 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 *’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 ① 업종별(철강 등)·기술혁신·표준화 등 민관 협업체 구성·운영, ②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③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④ 대규모 R&D사업 추진, ⑤ 세제·금융·규제 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

특히 “최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금번 킷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표준화 전략 협의회 활동에 관련 기업, 표준화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신학기용품, 유·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안전성조사 및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적발 제품 리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20.5~12월)를 통해 산업부 소관「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국표원과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이하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33개,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17개

(학용품: 11개 제품)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사프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 학용품 11개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

(유·아동용 의류 등: 22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

(완구: 6개 제품)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6개

(안경테/가죽제품: 11개 제품)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유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하였다.

(직류전원장치 등: 2개 제품) 온도 상승 기준치를 4.2°C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1개와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또한,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하였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3. 식약처,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식품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규제 상담, 안전성 검사 지원 등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월 25일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온라인 설명회를 갖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신생기업 또는 소규모 식품업체를 포함한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내용은 ▲식품안전국가인증제 관련 정책방향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지원 사업 안내 ▲2020년 시범사업 참여 업체 사례 발표 ▲주요 수출국(미국, 일본 등)의 수출 관련 이슈 소개 등이며
- 특히 수출상대국 규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안전성 검사 지원 등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국가인증제

- ※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다음 2가지 방향으로 추진
 - ✓ **(제도개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춘 수출식품의 안전관리 제도 마련
 - HACCP에 글로벌 유통업체(코스트코, 월마트 등)가 요구하는 가짜식품(food fraud), 식품사고 예방(food defence), 알레르기 관리 등 추가
 - ✓ **(통관지원)** 수출 상대국 규제 정보 제공, 통관단계 애로해소 지원
 - 맞춤형 규제 상담(통관서류, 시설등록, 표시), 수출전 안전성 사전검사, 증명서 발급

-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와 인증원은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월 중으로 참여업체 제품의 첫 물량(소스류, 견과류가공품 0.7톤)이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식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043-928-0165~6)으로 문의 또는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or.kr) → 설명회 신청 →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널 검색 후 입장

- <첨부> 1. 식품안전국가인증제 개요
2. 2021년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설명회 안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참고1

식품안전국가인증제 개요

□ 식품안전국가인증제

○ 식품업계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식품안전종합지원 시스템으로 2가지 방향으로 추진

- (제도개발)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식품의 제조·가공·유통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국제적 요구에 맞춘 제도 마련

✓ ‘한국형 식품안전인증제’(K-NFSC, Korea National Food Safety Certificate)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식품안전경영***을 보강한 식품안전 인증규격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마련 중인 제도(수출식품에 한정)
- *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경영, 감사, 식품방어,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시스템
- 국제식품산업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의 승인을 통해 국제적인 인증규격으로 지위를 가짐

- (통관지원) 수출상대국의 기준·규격에 대한 맞춤형 상담, 관련 정보제공, 수출전 사전검사, 증명서 발급 등 수출업계의 통관단계 애로해소 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참고2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설명회 안내

< 2021년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설명회 안내 >

가. 참석대상 : 해외 주요 국가(미국, 일본 등)에 수출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업체

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2.25.(목), 14:00~16:00
- 장 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행(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다. 주요내용

- 식품안전국가인증제 관련 정책방향
- 2021년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지원 사업 등 안내
- 2020년 시범사업 참여 업체 사례 발표
- 주요 수출국(미국, 일본 등) 수출 관련 이슈 공유
- 업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라. 참가신청 :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hkim@haccp.or.kr, sangwoo422@haccp.or.kr) 송부

마. 기타문의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23)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043-928-0165~0166)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4. 인도, 신규 화장품 관리규정 시행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HFW)*는 12월 15일 자국의 신규 화장품 관리규정인 화장품 규정 2020을 공포하였으며 1945년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및 화장품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즉시 발효 되었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본 신규 화장품 관리규정은 기존 의약품 및 화장품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여전히 존속 되지만, 의약품과 화장품을 별도 체계하에 관리하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인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국 내 화장품의 수입, 제조, 라벨링,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합니다.

본 규정은 2018년 고시된 기존 규정보다 보다 강화된 이행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이행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중앙의약품표준통제기구(CDSCO)*로부터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취득한 모든 기존 승인, 허가 등은 만료일 또는 새로운 규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18 개월까지의 유예기간 중 더 긴 기간까지 유효함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화장품 제조업체는 새로운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국 내 화장품 기술표준인 BIS IS 4011 : 2018 을 준수해야 함
-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관리규정 내 개정된 화장품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재정적인 벌칙 규정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gazette.nic.in/WriteReadData/2020/223714.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5.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21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영 제38조 제1항제2호와 제38조제1항제8호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1	신청인정보	신청인정보
2	식별정보	식별정보
3	노출정보	노출정보
4	안전사용 정보	안전사용 정보
5	분류 및 표시	분류·표시 및 포장
6	원료 및 제조 공정	원료, 제조 공정 및 제조·보관 시설
7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8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9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10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11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12	효과·효능	효과·효능
13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다만 시험자료, 예측자료, 문헌자료 등의 자료로 입증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자료제출이 면제됩니다.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 등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면제조건과 자료제출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살생물제품에 대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새로운 살생물제품을 승인신청하는 경우로 이전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이거나 과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인 경우
-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여러 개의 살생물제품을 한꺼번에 승인신청하는 경우로 동일한 자료이거나 과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인 경우

제출 시 제출자료가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작성된 시험자료의 경우, 원문과 함께 국문 시험요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보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ier.go.kr/NER/cg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menuNo=13001&bbsId=BBSMSTR_00000000031&ntId=27727&Command=REA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6.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년 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및 제10조, 생활화학제품 중 승인대상 제품별 정의 제시 및 품목군 정비
 - *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단일화)
- 제4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자료의 개정
 -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승인 신청자료 목록 수정
- 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 승인·신고 사항 및 절차 마련
 - 법률에서 변경승인의 의무화를 명시(제10조제7항)함에 따라 기 승인 제품의 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구체적인 해당 사항을 시행규칙(제6조제3항, 제4항)에 부합되게 규정
- 제8조,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 요건 명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품질 관리 의무(법률 제36조의2)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승인 신청 자료의 효율적 작성 지원을 위한 별표 세부사항 변경
 - [별표 1] 승인신청항목 제출방법 개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별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중 국외 공정서 규격의 원료물질에 대한 추가 제출자료와 가습기용 제품의 흡입독성시험자료 제출 명시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면제 대상의 인정 범위, 제품의 독성 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in vitro 추가), 시험결과(살균능, 안정성 등)의 요약서 양식 추가 제공 등
 - [별표 4] 살충제주요함유물질목록 등제시
 - [별표 5] 승인번호 부여기준에서 기타 제품 코드(8)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ier.go.kr/NER/cop/bbs/selectNlLoginBoardArticle.do?menuNo=13001&bbsId=HBSM51R_00000000031&rttlc=2/635&Command=READ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주의> 본뉴스는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제공하는것으로무단배포를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2021년 2월 1일 산자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공고 하였습니다.

< 2017~2020년 모잠비크 자동차 등록 대수 >

연도	2017	2018	2019
자동차 수(대)	1,103,291	1,306,337	1,397,629
증감율(%)	-	18.4	6.9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INE), 2020년은 추정치

지역별 차량 등록은 수도권인 마푸투시와 마푸투주 두 지역이 가장 많다. 전체 모잠비크 차량등록 중 81.6%가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마푸투시와 마푸투주가 전체에서 각각 43.9%, 37.7%를 차지한다.

< 모잠비크 지역별로 살펴본 자동차 등록 대수(2019년 기준) >

지역명	소형		중대형		소계	
	자동차 수(대)	비중 (%)	자동차 수(대)	비중 (%)	자동차 수(대)	비중 (%)
합계	835,607	59.8	562,022	40.2	1,397,629	100
Niassa	5,667	0.4	2,886	0.2	8,553	0.6
C. Delgado	9,240	0.7	4,718	0.3	13,958	1.0
Nampula	33,269	2.4	17,180	1.2	50,449	3.6
Zambezia	3,482	0.2	569	0.0	4,051	0.3
Tete	11,818	0.8	4,999	0.4	16,817	1.2
Manica	17,848	1.3	9,320	0.7	27,168	1.9
Sofala	50,482	3.6	18,072	1.3	68,554	4.9
Inhambane	19,205	1.4	14,995	1.1	34,200	2.4
Gaza	20,072	1.4	13,104	0.9	33,176	2.4
Maputo	311,893	22.3	215,041	15.4	526,934	37.7
Maputo City	352,631	25.2	260,656	18.6	613,287	43.9

* 주 : 비중은 전체 등록 차량수 대비 비중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INE)

< 모잠비크 마푸투 시내 도로와 차량 >



자료 : 무역관 직접 촬영

모잠비크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된다. 모잠비크에선 아직 신차보다 10년 정도 된 중고차가 주력으로 판매된다. 모잠비크는 도로 상황이 열악해서 소비자들이 SUV, 픽업트럭 등 가격이 비싸지만 중대형 차량을 많이 선호한다.

현재 모잠비크에선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산 차량 점유율이 가장 높다. 모잠비크는 한국과 달리 운전대가 차량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일본산 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참고로 모잠비크에선 왼쪽 운전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은 가능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고차로 수입되는 것은 금지된 상황이다.

□ 모잠비크 자동차 부품 시장 현황

모잠비크에는 일부 라디에이터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동차 부품들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지에서 있는 차량 제조사별 공식 딜러샵을 제외하고는 순정품보다는 비정품 부품이 많이 판매된다. 모잠비크 자동차 부품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딜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중동 등 해외에서 저가로 부품을 조달해 모잠비크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잠비크는 전체 도로의 20% 정도만 포장되어 있다. 나머지 약 80%는 비포장으로 도로 사정이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인지 차량 서스펜션과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브레이크 패드, 베어링, 점화 플러그, 필터 등의 부품에 대한 수요도 많다.

흥미롭게도 모잠비크 소비자들은 중고차에서 나온 부품 구매를 선호하는 편이다. 새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시된 차량에 장착된 부품은 진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시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전용 매장에서 부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매장들은 소량의 다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급 사정이 좋지 않아 제품을 필요할 때 바로 구매하기 어렵다. 또한, 아직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 모잠비크 마푸투 시내의 자동차 부품 판매 >



자료 : 무역관 직접 촬영

□ 한국산 자동차 판매 및 부품 공급 현황

2020년 무역협회 통계(MTI 3단위 기준)로 집계되는 대모잠비크 자동차 수출액은 약 200만 달러, 자동차 부품은 약 10만 달러 정도다. 참고로 현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모잠비크에서 판매된 한국산 신차는 350대 정도로 파악된다. 다만, 신차 수출외에도 3국을 통해 수입된 중고차도 제법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신차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마푸투에 있는 현지 딜러샵에서 수리를 한다. 다만, 한국산 중고차 소유 소비자들은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일반 정비소를 이용하는 편이다. 이 경우 적시에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에 시간이 제법 걸린다. 그리고 부품 조달 및 수리 기술이 양호한 남아공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제법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모잠비크 마푸투 시내의 국산차 딜러샵 전경 >



자료 : 딜러샵 홈페이지

□ 수입 동향

모잠비크에서 2019년 기준 가장 많이 사용되는 Top 5개 부품의 수입액은 4,000만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2018년 수입액인 3,753만 달러보다 6.8% 증가한 것이다. 2019년 수입액은 2017년과 비교해서는 27% 이상 증가하였다.

< 모잠비크 수입 자동차 부품 Top 5 >

(단위 : 천달러, %)

Product Description	HS Code	'17	'18	'19
Parts and accessories, for tractors,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870899	24,623	24,924	25,529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870850	555	2,090	5,076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870829	2,588	5,739	3,607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870880	1,740	2,582	3,082
Brakes and servo-brakes and their parts	870830	1,932	2,194	2,795
Total Amount		31,438	37,529	40,089
Growth Rate (%)		-	19.3	6.8

자료 : Trade Map

모잠비크의 자동차 부품 주요 수입국은 남아공, 중국, 미국, UAE, 포르투갈 등이다. 2019년 기준 남아공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이 전체의 61.8%에 달한다. 남아공에서 수입이 많은 것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양국 수도 간 거리가 550km 정도로 가깝기 때문이다. 육로를 통해 필요할 때 적시에 부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직은 한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부품 비중은 낮은 편이다.

< 모잠비크의 자동차 부품별 주요 수입국 비중 >

(단위 : %)

HS Code	수입국 1	수입국 2	수입국 3	수입국 4	수입국 5	기타
870899	남아공	중국	인도	UAE	미국	한국
	35.1%	16.9%	12.8%	9.5%	9.5%	0.6%
870850	남아공	미국	중국	브라질	일본	한국
	93.6%	2.5%	1.6%	0.5%	0.3%	0%
870829	남아공	중국	홍콩	미국	UAE	한국
	59.4%	14.8%	5.4%	5.2%	2.9%	0%
870880	남아공	멕시코	중국	포르투갈	UAE	한국
	64.3%	9.0%	8.7%	7.3%	2.8%	0%

870830	남아공	중국	미국	포르투갈	UAE	한국
	56.7%	13.2%	11.3%	7.6%	2.2%	0%

- 자료 : Trade Map

□ 주요 유통 기업

모잠비크에서 자동차 부품은 규모 있는 전문 수입상뿐만 아니라 여러 작은 회사들이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잠비크의 자동차 부품은 주로 나이지리아 상인들이 저가의 제품을 해외에서 조달해 판매하고 있으나 통계로 정확히 나타나진 않는다. 아래 기업들은 한국에서 부품을 구입해 판매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다.

○ Auto Acessorio Grande Premio

동 사는 모잠비크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 다양한 제조사들의 부품을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 서스펜션 부품뿐만 아니라 오일, 필터, 브레이크 슈즈, 연료 첨가제, 배터리, 램프, 벨트 등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한다.

수도인 마푸투와 인근 도시인 마톨라 그리고 샤이샤이(Xai-Xai) 등에 매장이 있다. 주로 UAE, 남아공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없으나 아래 페이스북을 통해 취급하는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모잠비크는 인터넷 여건이 열악해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다.(페이스북 링크 : <https://www.facebook.com/AAGPremio/>)

○ Nobel Auto Lda

Nobel은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이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엔진 부품, 윤활제 등 다양한 부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2009년 설립되었다. UAE, 남아공,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아직 홍보 사이트는 없다.

□ 수입 관세 및 수입 규제

모잠비크의 자동차 부품 수입세는 대략 7.5%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VAT) 17%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 수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인 상품 수입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다른 공산품처럼 Pro-forma Invoice, B/L 등과 같은 일반적인 통관 서류들이 필요하다.

□ 자동차 부품 관련 인증

모잠비크 정부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인증은 없다. 일반적으로 ISO, CE 등과 같이 국제적인 인증을 갖춘 제품을 선호한다.

□ 시사점

아직 모잠비크 자동차 시장은 아직은 큰 편이 아니다 보니 부품 시장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모잠비크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기업들도 틈새시장으로 개척해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잠비크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요를 잘 파악해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잠비크에서 많이 운행되는 일본, 유럽 등 국가에서 제조된 브랜드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동시에 수요는 많으나 저가를 선호하는 중고차 부품 시장보다는 출시 5년 이내 신차의 교체 부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모잠비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유통하는 바이어들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현지 수출하기 위해서는 남아공에서 수입되는 부품들과의 경쟁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모잠비크에선 많은 부품을 남아공에서 수입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남아공에서 차를 수리하는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인도 등에서 저렴한 부품들이 많이 수입되기 때문에 품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모잠비크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기에 아직은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 모잠비크 통계청, 언론 보도 내용, 현지 자동차 수입 딜러 , 부품 수입 바이어 인터뷰 등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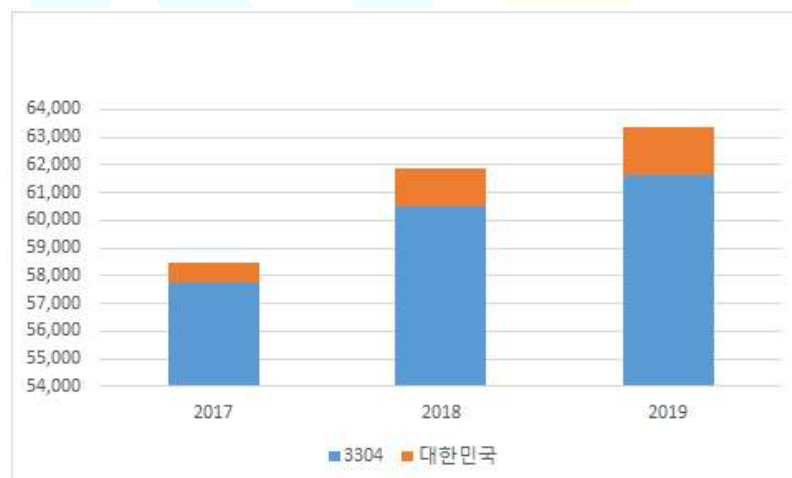
9. 멕시코 화장품 수출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 6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시장 진출 기획 노리려면 인증 등 절차 이해 필요-
- 화장품 시장 커지면서 인증, 통관 관련 세관 검사 엄격해져-

시장현황

2019년 멕시코 뷰티용품(HS CODE 3304*) 시장 규모는 6억1,650만 달러로 매년 1.3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8%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2.6%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8~2020년 멕시코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점유율 26.6%)이며, 한국은 2019년 점유율 1.9%로 8위, 2020년 점유율 2.1%로 7위를 기록하였다.

멕시코 뷰티용품 전체 수입액 및 對한국 수입액 추이(2017-2019년)
(단위 : 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2021.1)

화장품류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의 절차는 크게 수입신고 전후로 나뉘어진다.

수입신고 전에는 하기의 세 가지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수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공인된 관세사와의 업무 계약이 필요하다.

둘째, **멕시코 표준규격(NOM)** 인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셋째, **멕시코 식약청 위생등록(COFEPRIS)**을 신청해야 한다.

수입 신고 시에는 관세 납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수입신고서
- 2) 송장 (Commercial Invoice)
- 3) 선하증권 (Bill of Landing), 항공일 경우 Airbill
- 4)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 5)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do de Origen)
- 6) 수입허가서(필요한 경우)

송장의 경우 스페인어 외의 언어로 표기된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일반 보건법에 따라 위 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NOM) 관련 허가서 및 제품을 심사한다. 서류 및 제품 심사가 끝나면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된다.

주의사항

한국 기업이 화장품을 멕시코로 수출할 경우, 현지 파트너 혹은 거래처가 멕시코 재무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 가능 업체 허가증에는 수입 취급 가능 품목과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출 계약 시 수입 업체가 적법한 수입허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량의 화장품 샘플을 통관할 경우에도 세관에서는 식약청 인증 및 공식 수입업자의 등록 서류 및 수입허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바이어 배포 목적으로 샘플을 무작위로 송부할 경우 반송될 리스크가 있다.

정식 통관 시 제품 라벨링에 오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통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일단 보세 창고로 옮겨 문제를 해결한 후 통관하는 방법도 있다.

멕시코에 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성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제품의 성분과 금지 성분에 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관 시점에 제품의 스페인어 라벨이 없을 경우 이 또한 제품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멕시코 표준 규격 인증제도(NOM)

멕시코 공식 표준 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은 멕시코 수입 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품 안전기준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칙, 포장, 상품정보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의 공식 표준규격은 NOM-141-SSA1/SCFI-2012에 해당되며 통칭 NOM141로 통관 절차 이전에 제품명, 제품 성분 등에 대한 일반 정보 전체에 대해 스페인어 라벨링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장품 관련 멕시코 표준규격 목록

NOM인증	설명	시행일자	관련링크
NOM-089-SSA1-1994	화장품 사전 심사 방법	1995년 10월 25일	https://bit.ly/3ch4Aqv
NOM-141-SSA1/SCFI-2012	포장된 화장품 라벨링, 위생 및 상업적 라벨링	2012년 9월 19일	https://bit.ly/3r39Z8P
NOM-141-SSA1/SCFI-2012	NOM-141-SSA1/SCFI-2012의 개정판	2014년 8월 15일	https://bit.ly/3opTZfo

자료: 멕시코 식약청(COFEPRIS),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연방관보의 향수 및 미용제품 제조 시 금지 및 제한 제재에 대한 협의(<https://bit.ly/3t5Ea0F>) 및 향수 및 미용제품 제조 시 금지 및 제한 제재에 대한 물질 제안 협의 규정(<https://bit.ly/3pGgEoQ>)을 준수한 항목은 사전 제품 등록 및 성분의 라벨링(스페인어) 작업을 선행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제품의 내용물이 제조 금지 및 제재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NOM 인증 신청에는 신청비용이 발생하며 소요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통상 1주에서 2-3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NOM 관련 라벨링 세부내용 <https://bit.ly/3s5pFZI>

*NOM 인증 신청서 작성 <https://bit.ly/3k80dzR>

식약청 등록 절차(COFEPRIS)

멕시코 식약청(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 일명 코페프리스(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제품(의료, 식품, 제약, 특정 기능성 화장품, 기타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심사를 통해 멕시코 내 해당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3304 1001/ 2001/ 3001/ 9101/ 9999에 해당되며 관세율10%에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된다. HS Code 3304, 9901은 관세율15%에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되므로 품목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내 반입을 위해 관세청에서 지정한 관세 납부 후 식약청 사전 승인 신청 양식 및 복사본, 관세 납부 증명서 및 멕시코 내 상품 반입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심사 기간은 약 5일-40일이다. 경우에 따라 소요기간은 축소 또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 및 필요 시 상품 샘플 요청을 통한 자체 검사 시행 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반입 승인여부를 공지한다.

*사전 승인 신청서 양식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s://bit.ly/2LNg40A>에서 다운 가능

자료: 멕시코 식약청(COFEPRIS),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경제부(SE), 일반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무역을 위한 국가정보 서비스(SNICE), 멕시코 화장품 상공회의소(Canipec),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La Jornad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독일 마스크 공급 및 수입 현황 분석

- 독일, 한국 KF 94 마스크에 준하는 FFP2 마스크 및 의료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 필수 인증 준비와 바이어 적극 대응이 마스크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지난 2월 10일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한국의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록다운을 3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행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발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확산될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록다운을 3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독일 연방정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5차 록다운 연장 현황

	적용 대상 및 내용
5차 연장 [21.2.10~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 및 개인공간 모임은 본인 가구 제외 최대 1명으로 제한(기존에 산입되지 않았던 14세 이하 어린이도 산입) 2) (추가) 반경 15km 이외 지역 이동금지: 인구 10만명당 7일 평균 신규 감염자수 200명 초과 지역은 거주지 기준 반경 15km 이외 이동금지 3) 재택근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시행을 확대해야 함. ** 독일 연방정부는 재택근무 관련 조치를 최소 3월15일(월)까지 시행 예정 ***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사무실 내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의료용 마스크(덴탈 마스크 또는 FFP2 등)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요식업 및 미용 서비스업(식당, 주점 등 / 미용실 등): 일부완화, 미용실은 3월 1일(월)부터 사전 예약제 운영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하에서 다시 영업 가능 ○ 상점(슈퍼마켓 등):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 금지이지만, 10만명당 최근 7일 신규 감염자수가 35 이하로 내려갈 시, 각 지방정부는 슈퍼마켓 등 생필품점 외 기타 일반상점 대상 영업허가 가능 (손님 1명당 최소 20㎡ 면적 확보 필수) ○ 여가(여행, 극장, 스포츠 활동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행: 긴박하지 않은 국내여행 취소 권고 및 국내여행 시 타 지역 숙박제한 실시, 친지 방문 또한 최대한 자제 요청. 출장의 경우 숙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출장목적 등이 담긴 증명서를 준비하여 숙박업체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2) 문화산업: 기존과 같이 극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의 영업 금지는 동일하나, 인구 10만명당 최근 7일 신규 감염자수가 35 이하로 내려갈 시, 각 지방정부는 박물관, 갤러리 대상 영업허가 가능 (손님 1명당 최소 20㎡ 면적 확보 필수) 3) 스포츠 활동: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등 영업 중지. 조깅과 같은 1인 외부 운동은 허용. 분데스리가 등 프로경기는 기존처럼 무관중으로 진행 ○ 학교/유치원: 각 지방정부가 감염추이를 보고 개별적으로 대면 수업 허용 여부 결정

자료: 독일 연방정부

팬데믹 초기 마스크 대량 수입

2020년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독일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독일 연방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본격적으로 권장하였다. 갑작스런 대유행의 여파로 독일은 이 시기에 마스크 분량이 부족하여 많은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후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수량 확보에 주력한 독일 정부는 2020년 8월 27억 개의 마스크를 수입하였고, 2021년 9월까지 마스크 25억개 자체 생산을 목표로 총 6천만 유로를 투입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물량 확보에 집중하면서 2020년 8월부터 독일 시민들은 약국이나 드러그스토어*, 슈퍼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독일은 1차 대유행 시기에 상점, 대중교통, 공공장소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할 수 있었고, 따라서 마트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될 수 있었다.

* 드러그스토어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건강·미용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 업체를 뜻함.

독일 마스크 수입 현황 및 한국 제조사의 수출 성공 사례

독일의 마스크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관련 지표에서도 알 수 있다. 2020년 10월까지 기준 독일은 72억 5000만 달러의 마스크를 수입했는데, 이는 2019년 수입액 9억 2700만 달러보다 무려 681.46%가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이 수입한 마스크 중 81.09%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으며, 상위 5개국의 점유율이 90%에 달한다.

독일 마스크 수입 규모(HS Code: 630790 기준)
(단위: 천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			증감률 2019.10/ 2020.10 (%)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	중국	398,998	417,801	5,879,224	44.20	45.03	81.09	1307.18
2	네덜란드	87,367	81,260	346,679	9.68	8.76	4.78	326.63
3	베트남	43,683	50,285	142,120	4.84	5.42	1.96	182.63
4	홍콩	3,594	3,758	104,549	0.40	0.41	1.44	2682.08
5	폴란드	45,887	49,127	92,837	5.08	5.30	1.28	88.97
6	영국	46,271	47,523	76,024	5.13	5.12	1.05	59.97
7	오스트리아	18,162	17,135	70,578	2.01	1.85	0.97	311.90
8	체코	30,842	28,749	51,778	3.42	3.10	0.71	80.10
9	터키	15,424	13,203	46,920	1.71	1.42	0.65	255.37
10	벨기에	11,804	12,480	34,008	1.31	1.35	0.47	172.50
20	한국	1,070	525	12,703	0.12	0.06	0.18	2321.03
전체		902,759	927,754	7,250,007	100.00	100.00	100.00	681.46

주: 2020년 10월까지 집계

자료: IHS Markit

2020년 한국의 對독일 마스크 수출은 1200만 달러이며, 2019년(52만 달러) 대비 2321.03% 증가하였다. 물론 마스크 제조 경쟁국인 중국에 비하면 독일로 마스크 수출이 더딘 것은 사실이나, 2019/20년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독일 시장은 한국의 마스크 제조사들이 마스크 수출을 고려할 만한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독일의 마스크 수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증과 바이어 대응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실제 독일에 마스크를 수출한 A사의 사례를 보면 잘 파악할 수 있다.

국가	성공사례
독일	<p>. 기업명/수출액 : A사 / USD 45,000</p> <p>. 성공요인</p> <p>1) CE/FFP2 인증 구비</p> <p>2) 바이어가 최소발주량(MOQ) 충족 시 독일어 또는 영어 패키징 제공</p> <p>3) 국내기업의 신속한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p> <p>- 2020년 3월 독일의 1차 록다운 조치 후 동사는 바이어와 MOU를 체결하고 CE/FFP2 인증 준비를 완료하는 등 납품기한 이 촉박한 인콰이어리에 대한 동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수출로 이어짐.</p> <p>. 수출시 애로사항/유의사항</p> <p>1) KF94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이 중국산 KN95 마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조달 입찰 시 불리하게 작용</p> <p>2) CE 인증 시 본사와 제조공장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p> <p>- CE 인증을 신청하는 본사와 제조공장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가 추가 자료 제출 필요</p> <p>- 마스크에 CE/FFP2 인증과 EN149:2001 +A1:2009 인증번호를 필수적으로 각인하고 제품 패키징을 독일어로 제작할 경우 수출가능성 제고</p>

FFP2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차 팬데믹 시기에 독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스크는 일반 면 마스크나, 기능성 마스크였으며, 한국의 KF94 마스크에 준하는 FFP2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차 대유행 당시에는 독일 정부도 FFP2의 마스크의 착용을 크게 권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0월 말과 11월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차 대유행보다 확산 속도가 빨랐고, 사망자 수도 급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록다운을 실시하였고, 이때부터 FFP2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독일 정부는 2021년 1월 19일 4차 록다운 연장을 발표하면서 상점, 대중교통에서 FFP2급 마스크 및 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FFP2급 마스크를 갑자기 확보해야 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자체 생산하는 등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팬데믹 초기와 같은 마스크 가격 급 상승이나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독일 정부는 코로나 19에 취약한 60세 이상 연령층이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지 않도록 마스크 수령증(Berechtigungsschein)을 발급하였다. 이 수령증은 일종의 바우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구매자가 이 수령증을 약국에 제출하면 마스크 1개나 2개를 살수 있는 가격인 2유로에 6개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분은 건강보험에서 판매자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마스크 구매 수령증



자료: ATENNE BAYERN

하지만, FFP2 마스크가 대량 공급되면서 마스크가 정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U 국가에 유통되는 마스크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가늠할 수 있는 인증은 CE 인증인데, 현재 독일에서 유통되는 마스크를 보면 유독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CE 인증 번호가 있다. 해당 인증 번호는 CE 2163인데, 여기서 2163은 마스크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유럽 인증 기관의 고유번호를 뜻한다. 독일 기술무역협회(Verband Technischer Handel e.V.) 대표인 토마스 피어하우스(Thomas Vierhaus)는 "현재 약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엄청난 수의 FFP2 마스크가 인증 번호 CE 2163을 달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제조사의 마스크를 하나의 기관이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고 적합성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토마스 피어하우스와 같은 독일의 전문가들은 대량의 마스크 공급도 중요하지만, 마스크의 품질성과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에서 유통되는 CE 2163 인증 마스크



자료: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촬영

뿐만 아니라, 유럽의 FFP2/3마스크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정식 승인 인증 기관이 아닌 인증 기관의 CE인증 번호가 찍힌 마스크가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위조 FFP2 마스크에 자주 사용된 CE인증 정보는 하기와 같다.

인증 번호	인증 기관	국가
CE 0865	ISET Srl Unipersonale	Italy
CE 1282	ECM (Ente Certificazione Macchine)	Italy
CE 1299	TSU Slovakia (Technicky skusobny ustav Piestany)	Slovakia
CE 2037	CELAB SRL	Italy
CE 2468	Zavod za ispitivanje kvalitete d.o.o.	Croatia
CE 2466	Zavod za ispitivanje kvalitete robe d.o.o.	Croatia
CE 2703	ICR Polska	Poland

자료: HELLER MEDIZINTECHN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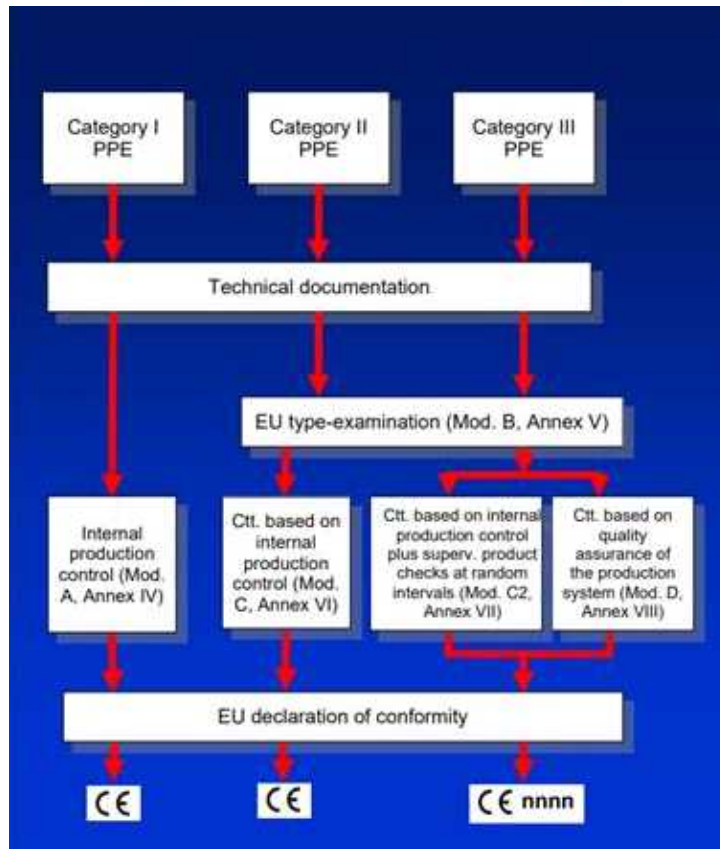
마스크 CE 인증 정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에 FFP2 마스크의 안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CE 인증이기 때문에, 독일로 마스크 수출 및 유통을 위해서는 CE 인증 획득이 필수이다. 마스크 CE 인증을 위한 정보 및 인증 기관 정보는 하기와 같다.

- 개인정보장구지침에 따른 CE 인증 규정

- 관련 지침 EU 규정 2016/425, 개인보호장구지침(89/686/EEC)
- 대상품목: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설계된 도구나 기기(마스크, 헬멧, 고글, 산업용 귀마개 및 장갑, 산업용 안전화, 추락보호용 장비 등)
- CE 인증 진행절차

카테고리별 CE 인증 절차



자료: EU 집행위원회

- 1) Category I (낮은 위험성 제품)
 - : 기술문서 제출 @ 부록 IV에 규정 된 내부 생산 관리 (모듈 A) 적합성 증명 @ DoC 선언(제조사 적합성 선언) @ CE 마크
- 2) Category II (중간 위험성 제품)
 - : 기술문서 제출 @ 부록 V에 규정 된 EU 형식 시험 (모듈 B) @ 부속서 VI에 규정 된 내부 생산 관리 (모듈 C)에 근거한 유형에 대한 적합성 증명 @ DoC 선언(제조사 적합성 선언) @ CE 마크
- 3) Category III (높은 등급 위험성 제품, FFP2(KF 94) 마스크는 여기에 포함 됨)
 - : 기술문서 제출 @ 부록 V에 규정 된 EU 형식 시험 (모듈 B) @ 다음 조건 i)나 ii) 중 택일, (i) 부록 VII에 규정 된 무작위 간격 (모듈 C2)으로 내부 생산 관리 및 감독 된 제품 점검에 근거한 유형 준수, (ii) 부록 VIII에 명시된 생산 공정 (모듈 D)의 품질 보증에 근거한 유형에 대한 적합성 증명 @ DoC 선언(제조사 적합성 선언) @ CE + NB 번호

* Module A: 제조자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유럽 인증 기관의 개입 없음.

** Module B EU 형식시험 (Annex V)

× EU 형식시험은 NB 기관을 통한 적합성 평가 절차로, PPE의 평가, 검증 등을 통하여 요구 사항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절차임

× EU 형식시험은 최장 5년간 유효

× 인증 기관은 인증서 만료 후 5년간 기술문서 보관

× 제조자는 기술문서를 PPE 생산 종료 10년간 보존

*** Module C2 - (Annex VII)

× 인증 기관은 생산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 확인

× 제품 확인은 최소 비정기적으로 최소 1년에 한번

**** Module D - (Annex VIII)

× 제조자는 인증 기관에서 품질관리 시스템 및 시험을 받아야 함

× 제조자는 심사를 위해 시험, 저장장소 등의 접근을 허용하고 필요로 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함

× 인증 기관은 품질관리 시스템이 유지하고 적용하는지 확인 하기위해 불시 방문 가능

***** EU 규정2016/425 가이드 라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PDF 파일 다운이 가능함.

[https://web-storage.mhlbergr-gruppe.de/files/file/PPE%20Regulation%20\(EU\)%29%202016%20425%20Guidelines%20-%201st%20Edition%20-%20April%202018.pdf](https://web-storage.mhlbergr-gruppe.de/files/file/PPE%20Regulation%20(EU)%29%202016%20425%20Guidelines%20-%201st%20Edition%20-%20April%202018.pdf)

또한 개인정보장구지침(89/686/EEC)은 하기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1989L0686>

- EU 규정 2016/425에 따라 승인된 인증 기관은 다음과 같다.

EU2016/425에 따른 승인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인증 기관	국가
CE 0068	MTIC InterCert S.r.l.	Italy
CE 0082	APAVE SUDEUROPE SAS	France
CE 0086	BSI Assurance UK Ltd	United Kingdom
CE 0099	AENOR INTERNACIONAL, S.A. (Unipersonal)	Spain
CE 0120	SGS United Kingdom Limited	United Kingdom
CE 0121	Institut für Arbeitsschutz der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IFA) Prüf- und Zertifizierungsstelle im DGUV Test	Germany
CE 0158	DEKRA Testing and Certification GmbH	Germany
CE 0159	CENTRO NACIONAL DE MEDIOS DE PROTECCION-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 E HIGIENE EN EL TRABAJO	Spain
CE 0161	ASOCIACION DE INVESTIGACION DE LA INDUSTRIA TEXTIL	Spain
CE 0162	LEITAT Technological Center - Acondicionamiento Tarrasense	Spain
CE 0194	INSPEC International Ltd.	United Kingdom
CE 0200	FORCE Certification A/S	Denmark
CE 0333	AFNOR Certification	France
CE 0334	ASQUAL	France
CE 0338	Shirley Technologies Limited, trading as BTTG	United Kingdom
CE 0370	LGAI TECHNOLOGICAL CENTER, S. A./Applus	Spain
CE 0402	RISE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AB	Sweden
CE 0418	DGUV Test Prüf- und Zertifizierungsstelle Fachbereich Rohstoffe und chemische Industrie der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e.V. (DGUV)	Germany
CE 0426	ITALCERT SRL	Italy
CE 0445	Bundesamt für Eich- und Vermessungswesen	Austria
CE 0474	RINA Services S.P.A.	Italy
CE 0477	Eurofins Product Testing Italy S.r.l.	Italy
CE 0493	CENTEXBEL (WETENSCHAPPELIJK EN TECHNISCH CENTRUM VAN DE BELGISCHE TEXTIELNIJVERHEID - DIVISIE GENT)	Belgium
CE 0534	ÖTI - Institut für Ökologie, Technik und Innovation GmbH	Austria

CE 0598 (ex-0403)	SGS FIMKO OY	Finland
CE 1008	TÜV Rheinland InterCert Muszaki Felügyeleti és Tanúsító Korlátolt Felelősségű Társaság	Hungary
CE 1023	INSTITUT PRO TESTOVÁNÍ A CERTIFIKACI, a. s.	Czech Republic
CE 1024	Vyzkumny ustav bezpecnosti prace, v. v. i.	Czech Republic
CE 1105	CCQS UK LTD	United Kingdom
CE 1437	CENTRALNY INSTYTUT OCHRONY PRACY - PANSTWOWY INSTYTUT BADAWCZY (CIOP-PIB)	Poland
CE 1463	POLSKI REJESTR STATKOW S.A.	Poland
CE 1783	TURKISH STANDARDS INSTITUTION (TSE)	Turkey
CE 1809	Institutul National de Cercetare-Dezvoltare pentru Securitate Miniera si Protectie Antiexploziva	Romania
CE 2008	DOLOMITICERT S.C.A.R.L.	Italy
CE 2163	Universal Certification and Surveillance Service Trade Ltd. Co.	Turkey
CE 2198	KR HELLAS LTD.	Greece
CE 2233	GÉPTESZT Termelőeszközöket Felülvizsgáló és Karbantartó Kft.	Hungary
CE 2452	Vojenský technický ústav, s. p.	Czech Republic
CE 2534	Instytut Technologii Tekstylnych CERTEX Sp. z o.o	Poland
CE 2756	Institutul National de Cercetare Dezvoltare pentru Protectia Muncii - I.N.C.D.P.M. „Alexandru Darabont“	Romania
CE 2766	CITEVE Certificação Unipessoal Lda	Portugal
CE 2797	BSI Group The Netherlands B.V.	Netherlands
CE 2834	CCQS Certification Services Limited	Ireland
CE 2841	MNA LABORATUVARLARI SANAYI TICARET LIMITED ŞİRKETİ	Turkey
CE 2849	INSPEC International B.V.	Netherlands
CE 2890	CIS INSTITUT, tehnično preizkušanje in analiziranje, d.o.o.	Slovenia

주: 블랙시트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 인증 기관에서 받은 CE인증은 EU에서 인정되지 않음.
기존의 인증서는 2022년 1월 1일 까지만 유효함.

시사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장기간 록다운을 실시하고 있으며, 록다운 4차 연장 때부터 한국의 KF94급 마스크에 준하는 FFP2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의 의무화를 결정하였다. 독일 정부가 마스크 수입 및 생산에 만전을 기하며 팬데믹 초기에 발생했던 마스크 부족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량 공급으로 인해 마스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실제 위조 마스크가 유통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독일은 이러한 위조 마스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의 안전성에 더욱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독일로 수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도 마스크의 안전성 입증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IHS Markit, SGS, ATENNE BAYERN, VerbandTechnischer Handel e.V., Tageschau,HELLER MEDIZINTECHNIK GmbH &Co. KG, BR 24, 유럽집행위원회, 독일 연방정부, 주 독일 대사관,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 독일 대사관 본 분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썸네일 출처: Norddeutscher Rundfunk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일본 제균 물티슈 시장 동향

- 코로나 사태 이후 위생의식 변화로 소독용품 수요 급증 -
- 천연 유래 성분으로 안전성을 중시한 상품 및 스마트폰, 태블릿 액정 전용 상품 등의 등장 -

제균 물티슈(HS CODE 3808.94) 상품 정보 및 관세율

품목명	HS CODE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소독제 (제균 물티슈 등 포함)	3808.94	4.9%	3.9%

자료 : 일본 무역통계 실행관세율표(2021.1.1)

시장조사기업 인테지(SRI 데이터 금액 베이스)의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 국내 제균 물티슈 시장은 2014년에 처음으로 실적이 100억 엔을 돌파(102억 엔, 전년대비 7% 증가)하였다. 그 이후 국민의 위생 의식의 상승으로 높은 시장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며 2020년부터 확대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성장 가능 분야로 전망된다.

제균용 물티슈 시장에서 판매 No.1을 기록하고 있는 에리엘 “제균 가능한 알코올 타올”



※ 인테지 SRI 물티슈 시장(제균·항균·알코올) 2018년 2월~2019년 3월 누계 매출액
출처: 에리엘 웹 사이트

제균 물티슈 시장동향

물티슈는 주로 제균용 외에 소독용이나 일반용, 화장용, 유아용 물티슈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물티슈 전체에 대한 최근 몇 년의 일본 국내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으나, 가장 현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균용 물티슈이다. 아래 표와 같이 매년 물티슈 전체에 비해 제균용 물티슈가 전년대비 성장률이 높으며, 특히 최근 5년은 전년대비 성장률이 20%를 웃도는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9년의 제균 물티슈의 일본 국내 생산량은 전년대비 25.2%가 증가한 2억 9,300만 개를 기록했다.

2020년 제균용 물티슈의 국내 생산량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HS3808.94(소독제)의 수입액을 참고하여 유추할 수 있다. HS3808.94의 전 세계 수입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제균용 물티슈 국내 생산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비슷하다. 이를 고려하면 HS3808.94의 2020년(1월~11월 합계치)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배로 급증했고, 따라서 제균용 물티슈의 국내 생산량도 예년과 비교하여 그만큼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향후 제균용 물티슈의 수요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와 백신 개발·보급의 시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현 상황과 같은 특수는 그다지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앞으로의 위생 의식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상품의 개발 경쟁, 가격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며 시장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티슈의 일본 국내 생산량 추이

(막대 그래프는 왼쪽 축으로 단위는 백만개. 선 그래프는 오른쪽 축으로 단위는 전년대비 성장률(%))



※ 선 그래프 “전체(제균 제외)”는, 각종 물티슈의 합계에서 제균용을 제외한 값의 변동률.

자료 : JHPIA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에서 작성

최근 3년간 수입 규모와 동향

먼저 HS 3808.94(제균 물티슈 포함)의 일본의 수입은 수입 수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해외로부터 수입액은 6,565만 달러(전년대비 33.0%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1월~11월까지 합계)에 해외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금액은 4억8,11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배로 급증하였다. (HS 3808.94 수입통계는 소독제를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한 통계로, 제균 물티슈 단일품목의 통계가 아님에 유의)

이 수입액을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중국이 344억 1,700만 엔으로 1위(점유율 64.8%), 그 뒤로 한국이 89억 7,200만 엔(점유율 16.9%), 베트남(수입액 29억 9,000만 엔, 점유율 5.63%)순으로 일본 수입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對한국 수입액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對한국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일본의 소독제(HS3808.94) 수입 동향(국가별)

순위	국가명	2018년		2019년		2020년	
		수입금액 (백만 엔)	수입증감률 (%)	수입금액 (백만 엔)	수입증감률 (%)	수입금액 (백만 엔)	수입증감률 (%)
	총계	5,457.0	21.6	7,154.0	31.1	53,083.0	642.0
1	중국	2342.0	10.1	2,587.0	10.5	34,417.0	1,230.3
2	한국	153.0	-2.9	177.0	15.8	8,972.0	4,954.6
3	베트남	101.0	-23.0	201.0	99.5	2,990.0	1,384.3
4	태국	254.0	9.1	421.0	65.5	1,679.0	298.6
5	인도(인디아)	1084.0	86.7	1,637.0	50.9	1,677.0	2.5
6	영국	394.0	20.6	868.0	120.1	1,017.0	17.2
7	미국	347.0	80.1	514.0	48.1	783.0	52.3
8	대만	6.0	-79.2	14.0	130.5	317.0	2,205.3
9	독일	149.0	19.0	183.0	23.1	275.0	50.0
10	말레이시아	206.0	3.3	201.0	-2.3	213.0	6.1
11	캐나다	101.0	3.5	67.0	-33.9	171.0	155.3
12	오스트레일리아	53.0	-6.8	58.0	8.2	153.0	164.1
13	스위스	41.0	20.6	40.0	-0.9	128.0	217.8
14	네덜란드	154.0	36.1	129.0	-16.2	88.0	-31.8
15	싱가폴	21.0	27.4	4.0	161.9	36.0	831.4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2021.2.25. 조회)

경쟁 동향

일본 내 제균용 물티슈의 시장 점유율은 명확하게 확인이 어려우나, 주로 제지 제조사 및 관련 회사(다이오 제지, 일본 제지 크레시아, 오지네피아), 대기업 세정용 화장품 제조사(유니참, 라이온, 카오)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는 생활 용품 제조사인 아이리스오야마, 유아 용품 제조사인 와코도와 피존, PC 주변기 메이커인 엘레콤이나 산와 서플라이 등이 있다.

자칫 제균용 시트는 상품의 차별화를 두기가 어려워 치열한 가격경쟁에 노출되기 쉬운 상품군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잠재적인 소비자 요구를 환기시켜 가격경쟁에서 한 발 앞서는 제품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카오가 2019년 11월에 발매한 “퀵클 Joan (조안)”은 제균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극은 적어 호평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균 효과면에서는 알코올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소비자층에서는 “냄새가 신경이 쓰인다”, “사용에 있어서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오는 유산균에 영양을 주어 발효시킨 천연유래의 발효 젖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균 효과와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방식을 도입해 “Joan(조안)”의 제품화에 성공했다.

알코올 소독으로 인한 손의 건조 및 거칠어짐 등에 민감한 사람과 어린 아이, 애완동물 등 누구나 걱정없이 집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제균 효과만이 아닌 “살균 플러스 안심·안전”을 추구 하였다. 동 사 관계자는 이러한 세일즈 포인트가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9년 11월 발매부터 누계 250만개 이상 판매 히트를 기록한 카오 “퀵클 Joan”



자료 : 카오 웹 사이트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액정의 클리닝·제균 전용 물티슈도 인기가 있다.

스마트폰은 실제로 화장실 변기보다 약 18배의 세균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다코타 대학의 연구 조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정밀 기기이므로 흐르는 물로 씻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물티슈나 알코올 살균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 제균 처리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PC주변기기를 취급하는 대형 제조사 엘레컴은 그런 요구에 응하여 스마트폰·태블릿에 특화된 물티슈 클리너를 발매하였다. 덧붙여 인기가 있는 제균 티슈 “에리엘 제균 가능한 알코올 타올 바이러스 제거용” 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매 당 5.8엔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 제품은 1매 당 10.9엔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특화된 상품을 통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스마트폰·태블릿 화면에 특화된 “엘레컴 물티슈 클리너”



자료 : 엘레컴 웹 사이트

유통 구조 및 인증

기본적으로 대형 약국이나 홈 센터, 마트 등의 양판점이 주 판매처이다.

휴대용 사이즈의 제품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라쿠텐이나 Amazon 등의 EC사이트도 유력한 판로가 되고 있다.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생활잡화를 주로 취급하는 수입상사를 통해 진출하거나, EC를 중심으로 하는 수입상사를 통한 수출이 가능하다.

제균 물티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별도 인증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소독", "살균" 등의 단어를 명기할 경우에는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에 의해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며, 사용법에 따라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화장품이나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득한 수입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수출이 필요하며,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제조업자 또한 외국제조업자로서의 인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화장품 수입상사 L사 담당자에 따르면 "물티슈의 경우 성분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전문상사를 통한 수출을 권장한다."고 KOTRA 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등, 수출시 어떻게 분류될지에 대해 사전 시장조사(전시회, 관련 수입상사 접촉 등)를 통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제균 물티슈를 제조하는 일본 국내 제조사의 대부분이 가입하는 JHPIA*에서는 "제균을 표방하는 물티슈 류의 자주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일본 제균 물티슈 시장 내 통용되고 있는 유사조건 충족을 위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JHPIA(일반사단법인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 <http://www.jhpia.or.jp>

시사점

일본의 제균용 물티슈 시장은 최근 몇년간 성장률이 20%이상으로 유지되는 등, 위생 의식의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까지 겹치게 되어 2020년에 수입액이 전년대비 약 6.4배로 급성장 하였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어 시장 참가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제균의 효과와 제품의 가격이 판매상 중요한 요소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용시의 안전성이나 사용 편리성의 추구, 또 용도를 특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환기시키고 있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살균 효과와 판매 가격이라는 기본적 조건을 채우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제균용 물티슈의 새로운 용도 및 컨셉은 없는지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잠재적 요구를 발굴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 한국 무역협회, JHPIA(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MIPRO(일반재단법인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인테지, 에리엘, 카오, 엘레컴 등 자료 참고,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